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

[시행 2020. 4. 22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- 17호, 2020. 4. 22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성과평가정책과), 044 - 202 - 6928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(이하 "공동관리규정 ” 이라 한다)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,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 ” 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로 구축되고 연구시설 · 장비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ZEUS ” 라 한다)에 등록된 연구시설 ·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는 유지 · 보수비 비용을 말한다.
2. "통합관리기관 ” 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및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3. "통합관리계정 ” 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사용하도록 연구기관에서 개설 ·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.
4. "통합관리 단위 ” 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, 연구책임자 단위, 공동활용시설(연구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 · 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) 단위, 연구기관 단위로 구분된다.
5. "통합관리계정 책임자 ” 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계상 · 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.
6. "자체장비심의위원회 ” 란 「국가연구개발 시설 ·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구성 ·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7. "전문기관 ” 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과 이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 적용한다.

제2장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

제4조(신청자격) ①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는 기관
2.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
3. 별표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가진 기관

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(예산 · 협약 · 정산, 구매 · 자산 · 검수, 재무 · 회계, 성과관리 등)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(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)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
2.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
3.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

제5조(선정절차 및 지정)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
2.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 · 운영 실적 증빙자료
3.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 시스템 증빙 자료

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
2.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(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)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.

제6조(통합관리기관의 업무)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 · 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2.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수입,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)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 · 관리 · 감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업무
2.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
3.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 지원금과 시설 · 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

4.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8조(계정설정 단위)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, 공동활용시설, 연구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.

②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, 통합관리기관은 제7조의 운영규정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 · 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계정의 적립한도)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 및 한도는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,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, 연구기관 단위는 10억 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계상과 적립) ①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10%이내에서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 · 시스템 구축비

2.. 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

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 · 장비의 원활한 운영 · 활용을 위해 기관 지원금(교비, 간접비 등)과 운영 · 활용 과정에서의 시설 · 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협약 시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사용과 지급)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.

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다.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, 전체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는 협약종료일(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)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1. 연구시설 · 장비의 유지 · 보수

2. 연구시설 · 장비의 임차 · 사용대차 (기존의 임차 · 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하며,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)

3. 연구시설 · 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 · 설치

④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 계정에서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.

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 및 관리)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제11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 · 감독하고,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합연구시설 · 장비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.

③ 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,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운영현황 점검)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자체 운영현황 점검 결과 다음의 각 호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운영현황 점검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"점검대상기간 ” 이라 한다) 중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제11조제3항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 지출한 경우
2. 점검대상기간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변경하였거나, 통합관리기관 내 타 계정으로 회수한 경우
3. 점검대상기간 중 제9조제1항의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
4.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 계상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 · 감독 할 수 있다. 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통합관리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1.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및 관리 실적
2. 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 · 지출내역
3.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 ·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 지급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점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로 제13조제1항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확인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
2. 제13조제1항의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

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개선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 요청 후에도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 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 · 장비비는 제외한다.

제15조(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의 이관 · 반납)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. 단,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.

1.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 · 장비비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1조제3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 · 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의 포기, 연구시설이 폐쇄되거나 연구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이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칙

제1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9 - 53호,2019.6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.9.1부터 시행한다.